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이상 설치·운영 명시 >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69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이상 설치·운영 명시	2
【참고자료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4. 7월 기준)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0.

3. 회부연월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Ⅲ. 검토의견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이상 설치·운영 명시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u>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u>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 ----- ----- ----- ----- ----- ---- <u>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u> <u>1개소 이상</u>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1)에 따라 설치된 육아지원 기관으로,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

한편, '24. 7월 기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도에 모두 설치 완료('14.10.15.)되었으며,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28개 시군구 중 117개소가 설치·운영 중으로, 설치율은 51.3%임. <참고자료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구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시군구		25	11	3	6	2	2	5	-	31	3	5	3	6	3	6	5	1

자료: 교육부(중앙 1개소, 시·도 18개소, 시·군·구 117개소)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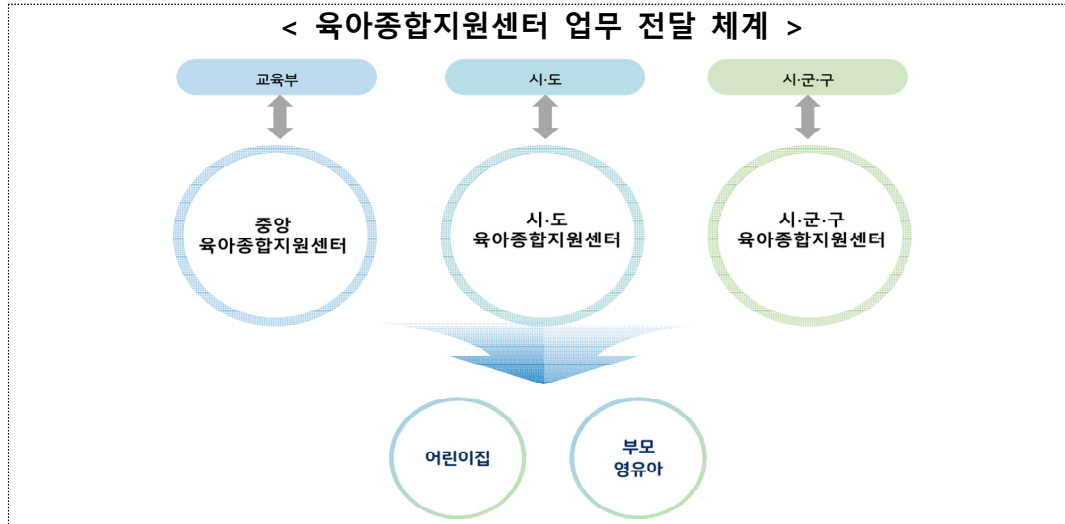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⑥ (생략)

【중앙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 ▷ 중앙센터-지역센터는 명시적인 상하관계는 아니나, 중앙센터에서 지역센터의 운영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구조임



- ▷ **(중앙센터)** 공통 교육 개발, 양육상담, 지방센터 총괄 관리 등 수행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국보육진흥원을 지정('22.6 ~)
 - **(센터운영 지원)** 신규개소 센터 지원, 전국 센터 현황관리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작·배포,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센터 직원교육 운영)** 전국 센터 직원 대상 직무교육 자료 제작,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 직급별 맞춤형 교육(16회)으로 업무역량 강화 지원
 - **(센터 자체평가 관리)** 자체평가 전환에 따른 평가체계 및 지표 개정으로 센터 운영 내실화 도모
 - **(유보통합 대응)** 유보통합 대비 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운영 및 개편 방안 연구 진행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지원

- ▷ **(지방센터)**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지역사회 특화 양육사업 수행 등 **실제적 사업 수행 주체**

구분	주요사업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육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부모상담, 놀이체험실 운영, 놀이프로그램 제공,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양육정보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지역특화 사업	가정양육, 저출산대책관련된 지역 특화사업,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 ▷ **(예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국비 100%)**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단,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자료: 교육부

개정안은 일부 시·군·구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지역사회 특화 양육사업 수행 등 실제적 사업 수행 주체로, 특히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부모교육, 놀이체험실 운영,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 보육서비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및 양육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인 학부모의 만족도²⁾가 높은 사업임.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의 영유아 수, 보육인프라 및 지리적 여건 등 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유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21~'23) 결과 > (자료: 교육부)

연도	학부모	어린이집
2021년	86.2%	87.3%
2022년	90.2%	89.3%
2023년	91.6%	91.0%

다만, 현행법 제7조제1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함과 함께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가능 개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 현행법 체계로도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1개소 이상의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개정에 따른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가 있음에도, '24. 7월 기준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28개 시군구 중 117개소가 설치·운영(51.3%) 중으로, 이는 지역의 인구구조에 따른 보육 인프라 수요와 지자체의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50%씩 부담³⁾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자체의 수요 대비 배정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지자체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을 위한 경비는 '22년부터 동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되어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아동복지법」 제45조⁴⁾에 따른

3) < 최근 3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지원 현황 > (자료: 교육부)

구분	예산(백만원)	수요(지자체수)	설치지원(지자체수)	비고
2021년	4,000	16	4	부산서구, 남구, 대전 서구, 전북 전주
2022년	2,700	16	3	전북 김제, 충남 당진, 부산 영도구
2023년	1,000	13	1	부산 동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단서를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역 내 개수 제한 없이 거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등 보육사각지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우선 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미설치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최적의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또한, 교육부는 지역별 1개소만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법령을 해석할 가능성에 대해, 유사 사례인 아동복지법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조항⁵⁾을 살펴봐도 별도로 설치 개소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4)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지역내 2개소 이상(서울시 양천구, 관악구 등)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보육사업 지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설치 개소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할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서비스 접근성 해소 및 편익 증진 지원을 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⁶⁾

문 의 처
02)6788-5192

6) 2024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②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단, 실제 운영 사례는 없음).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6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82개에서 304개 분소를 운영 중이고, 특히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시·군·구센터 미설치 지역 4곳에 설치 운영 중임.

【참고자료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총 136개소)

(2024. 7.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센터 개소수 (A)	시군구수 (B)	설치율 (A/B)
계	136	1	18	117	228	51.3%
중앙	1	1	-	-	-	-
서울	26	-	1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100.0%
부산	11	-	1	11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사하구	16	68.7%
대구	4	-	1	3 동구, 수성구, 달성군	8	37.5%
인천	7	-	1	6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10	60.0%
광주	3	-	1	2 동구, 서구	5	40.0%
대전	3	-	1	2 대덕구, 서구	5	40.0%
울산	6	-	1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5	100.0%
세종	1	-	1	-	-	-
경기	33	-	1	22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하남시	21	104.8%
경기 북부		-	1	9 가평군,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10	90.0%
강원	4	-	1	3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18	16.7%
충북	6	-	1	5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영동군	11	45.5%
충남	4	-	1	3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15	20.0%
전북	6	-	1	6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14	42.8%
전남	4	-	1	3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22	13.6%
경북	7	-	1	6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23	26.1%
경남	6	-	1	5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18	27.8%
제주	2	-	1	1 서귀포시	2	50.0%

자료: 교육부